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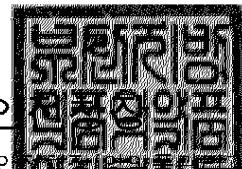
제목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주식회사광명당제약-광명당
지통]

1. 우리 청 관내 한약재 제조업체 「주식회사광명당제약」에서 제조 · 판매한 「광명당
지통」 제품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회수 · 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위해 등급	회수 사유
주식회사 광명당제약	광명당지통	K1882181022 (2021-10-21)	2등급	품질(비소) 부적합

2. 또한, 관련 협회에서는 귀 회원사에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 · 판매
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끝.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바이오의약품질관리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약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외품정책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외품정책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경기도지사(보건의료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건강과장), 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강원도지사(식품의약과장), 충청북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의료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울산광역시장(식의약안전과장),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강우생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약무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보험약제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한국소비자원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주무관 의료제품안전 전결 2020. 1. 28.
박소영 과장 김명미

협조자

시행 의료제품안전과-892 (2020. 1. 28.) 접수

우 4736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 / <http://www.mfds.go.kr>
청 의료제품안전과 14층 (범천동)

전화번호 051-602-6190 팩스번호 051-602-6247 / syp0605@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 회수명령자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박소영	051-602-6190	051-602-6247
회수사유	품질(비소) 부적합			회수등급 2등급

□ 회수의무자

제조(수입)업체	주식회사 광명당제약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09(달동)		
전화번호	052-272-2777	FAX번호	052-265-4827

□ 회수대상 제품

제품명	광명당지룡	분류	한약재
주성분	구인(지룡)		
효능·효과	제제 또는 조제용		
포장단위	자사포장단위	제조번호 K1882181022	제조일자(사용기한) 2018-10-22(2021-10-2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에 의하여 동 제품을 회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수대상 한약재를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의약품 취급자(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등)는 한약재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제4항에 따라 회수대상의약품등을 반품하고 별지제64호 서식의 회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취급자 회수 협조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
------------	------------	-------------	-------------

아울러, 동 사실을 귀 기관의 회원 및 일반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수대상의약품의 원활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수의무자에게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0. 1. 28.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
생략